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68

발의연월일: 2025. 4. 21.

발 의 자: 박성민·구자근·강선영

김대식 • 박준태 • 이헌승

최보윤 · 김위상 · 정동만

엄태영 · 김기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원은 임기 초에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국회 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후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 에서 선서를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것으 로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음에도 임기 4년 중 단 1회만 실 시하고 있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 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(안 제24조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"임기 초에 국회에서"를 "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본회의장에서"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서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4조(선서) ----- <u>제4조 및</u> 제24조(선서) 의원은 임기 초에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 <단서 신설> 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 "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회식마다 본회의장에서-----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----. 다만, 의장은 효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 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며,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 선서를 생략할 수 있다. 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"